

일련번호	4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구로구청 (가부서)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주의요구	2		

제 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내용 】

구로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17. 2. 8.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8.11.30., 금액 4,326백만 원)을 체결하여 '구로구 ○○○○○○○○○ 신축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17. 4.11. B사와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완수 '18.12.13., 금액 71백만 원)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3호, '17.2.4.,)」 제2장 공사감리업무 2.4.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에 따라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배치계획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고, 발주자(공사관리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16. 9., 국토교통부)」에 따라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현황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 건설공사의 하수급인(C사, D사, E사, F사, G사, H사)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미장조적타일공사, 금속창호공사, 판넬공사, 조경공사 등 총 6건의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관리,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해당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를 각각 3개소, 2개소, 6개소, 4개소, 2개소, 4개소 공사현장에 이중 배치하였다.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부적정하게 현장 배치하였는데도 공사감리자는 건설기술자를 이중 배치한 하수급인과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요구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하여 통보한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내역을 확인 및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구로구청장은

건설기술자를 부적정하게 배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벌칙) 제4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 공사감리업무 2.4.3.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배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등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공사관리관 및 진행 중인 모든 공사관계자에게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